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

■ 허중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94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3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2.

(3) 회 부 일 : 2025. 2.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인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형 항공사고,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위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① (생략)	제33조(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 ----- <u>공기업·준정부기관</u> ----- ----- ----- ----- -----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 ----- ----- -----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u>준정부기관</u>·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 9. (생략) ②·③ (생략)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공기업·준정부기관</u>----- ----- ----- 4의2.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간호사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음.¹⁾
 - 개정안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11월 4단계 확장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연간 여객 수용능력이 1억 600만명으로 확대되었음.²⁾ 따라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항 주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도 2024년 6월 항공기 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레디 코리아’ 훈련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여객기가 공항시설과 충돌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한 바 있음.³⁾

1)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2024.11.29.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4분기 기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및 용유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73개(의원 49, 치과의원 12, 한의원 12)와 보건지소 2개가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각 1개씩을 제외하면 영종국제병원⁴⁾이 유일하며, 종합병원은 없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항 제1, 2터미널에 위치한 인하대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2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나,⁵⁾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나사렛국제병원과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각각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따라 30km씩 떨어져 있어,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지난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영종 주민을 위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 항공기 사고와 일 평균 유동인구 20~50만명의 긴급 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초기 대응 체계를 위해 국립 종합병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⁶⁾

4) 의사 8명, 병상수 77개, 응급실 없음

5)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인력 규모

제1터미널(2001.3.12.개소): 총 14명(의사 4명,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행정 2명)

제2터미널(2018.1.9.개소): 총 5명(의사 2명, 간호사 2명, 행정 1명)

6) 영종도 내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영종국제병원은 2024년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사례(데일리메디 2025.1.7. 영종국제병원 “폐업 검토 철회”...지역주민 ‘안도’ 기사 참고)를 참고할 때, 영종도에서의 의료기관 운영은 도서지역의 특성 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영종도(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운서동, 영종동, 영종1동) 주민등록인구는 총 115,821명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2021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⁷⁾ 시장 공약사항으로 영종지역에 국립대병원 유치로 추진하는 등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의료자원이 열악한 공항 주변 지역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됨.

□ 다만, 공기업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의료법은 1951년 제정 당시 의료업자⁹⁾(현재의 의료인)가 아닌 자는 비영리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1973년 개정으로 의료인 외의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법인’으로 제한하였음.¹⁰⁾

7) 경인일보, “응급실 없는 영종도…인천공항 특수성 반영 공공의료 구축 ‘절실’”, 2021.4.28.

8) 인천광역시장 공약목록 109. 영종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유치
- 2022.12.2. 국립대병원 관계자 업무협의 이후 간담회 및 실무협의 수회 개최

9)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 (1951.12.25.시행) 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제1종 의료·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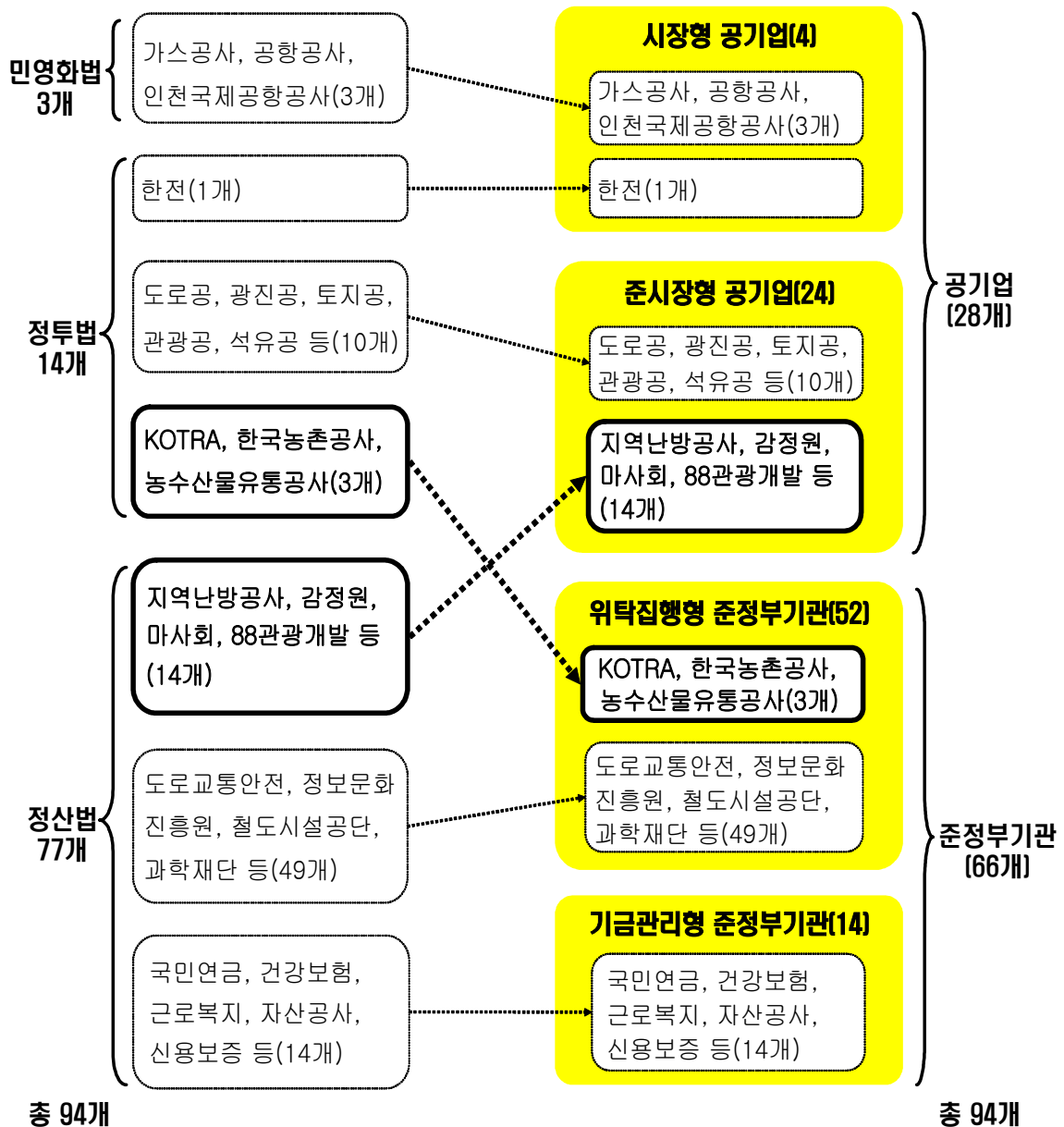
10) 의료법인제도의 입법취지: 의료(醫療)기관(機關)의 지역적(地域的) 편중(偏重),응급환자(應急患者)의 진료 거부(診療拒否),의료보수(醫療報酬)의 불적정(不適正) 등 의료(醫療)에 관한 여러가지 사회적(社會的) 문제(問題)를 야기(惹起)시킴으로써 국민의료(國民醫療)를 저해(沮害)하는 중요(重要)한 요인(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병원급(病院級) 이상의 의료기관개설허가요건(醫療機關開設許可要件)을 의료법인(醫療法人)으로 제한(制限)하여 의료(醫療)의 공익화(公益化)를 도모(圖謀)하고자 함. (의료법개정법률안(BB0193) 및 의료법중개정법률안(090136) 제안이유)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이 추가되었으며,¹¹⁾ 2006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로 통합되면서 공공기관의 분류를 재편함에 따라, 「의료법」에서도 2009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하였음.

-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5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공기업,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11) 의료법인(醫療法人) 설립(設立)에 부수(附隨)되는 세제상(稅制上)의 문제(問題)와 사유재산(私有財産)의 공익화(公益化)의 난점(難點) 등으로, 이의 원활(圓滑)한 운영(運營)이 기대(期待)될 수 없으므로, 의료법인제도(醫療法人制度)를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하는 동시(同時)에 민법(民法) 및 특별법(特別法)에 의한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의사(醫師), 치과의사(齒科醫師) 및 한의사(漢醫師)도 병원급(病院級) 이상의 의료기관(醫療機關)을 개설(開設)할 수 있도록 확대(擴大)하고 조문배열(條文配列)을 정비(整備)하려는 것임. (의료법중개정법률안(090136) 제안이유)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에 따른 2006년 공공기관 분류 변화>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전에는 (舊)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음.

- 참고로, 2009년 당시 정부투자기관은 총 14개였는데, 이 중 1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10개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리고 3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었음.

□ 2009년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만 제한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 당시부터 의료인이 아닌 자는 비영리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해온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¹²⁾

현행법에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아래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친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 등 진료왜곡,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¹³⁾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음.¹⁴⁾

1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료법위반] 판결요지 中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

13)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 공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중 영리 목적이 강함.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추가하고자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동법 제10조에서 공사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¹⁵⁾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함.

-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
-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1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참고로,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2208095)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공사의 사업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사고 대응과 관련한 종합병원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세계적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공항 인근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에 공기업을 추가하여 입법 취지와 달리 모든 공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2) 인천광역시(찬성)

□ 영종 지역 종합병원 유치 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필수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등)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이 우수한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이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 항공·재난의료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종지역은 ① 인구규모가 15만 명 이상(*'24년 장래인구추계)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②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을 담보하기에는 진료권 내 타지역과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천 중부 진료권 내에서도 영종지역을 별도 관리해야 함.

- 공항과 항만을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에 초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므로, 공항 근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3) 대한병원협회(신중검토)

- 병상 총량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국내 병상수급 실태에 따른 정부의 병상관리 추진 상황, 항공재난·국제 감염병 발생 상황 외 평시 진료 유지 가능성, 이미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주변 지역(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 종합병원으로의 추가적인 접근성 확보 상황('25년말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완공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항공재난 발생과 국제 감염병 확산은 새로운 병원 설립보다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 국내 외상·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24년 4~5월)에서 검토된 '전국 시·도(17개) 및 중진료권(70개)별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일반 병상)'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중부권 모두 '공급제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 병상 신증설 관리'의 경우 '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제한, 공급조정, 공급가능 지역으로 구분, 공급 제한·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4) 대한치과의사협회(반대)

- 국내 의료기관이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해당 건물 인근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에게 맡김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주체에게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설주체가 확대될 경우 거대 자본과 결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의료기관 유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신중검토)

- 감염병 대응 및 항공 재난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공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대한약사회(신중검토)

- 공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허가 시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원칙에 대한 예외가 확대되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될 우려도

존재하므로 공기업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형태가 공공병원인지 여부를 명확화할 필요 있음.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2.8개(1위)로 OECD 평균인 4.4개보다 약 3배 많으며, 병상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바, 인천국제공항에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여 병상 수를 확대하는 것의 타당성이 ‘대형 항공사고 및 국제적 감염병 대비’라는 항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병상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